

상담기록관리부

상담일시		2022. 6. 9.(목)		상담유형	[] 방문 [●] 전화 [] 기타()	
상 담 요청자	성명	김○○		생년월일	-	
	소속/직위(직급)	○○○○팀 / ○○		연락처	031-560-○○○○	

상담 내용 사례금을 받는 청소년활동관련 인터뷰가 외부강의등에 해당되는 지에 대한 문의
※ 인터뷰 내용은 직무 관련성이 있고, 해당 직원의 지위나 직책 등으로부터 유래되었음

상담 결과

- 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에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 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위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일정한 주제에 대해 설명하여 가르치는 것으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실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것인데,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의미를 고려할 때, 공직자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인터뷰를 하여 1:1 문답을 통해 의견을 내고 그 의견이 정책의 자문이나 연구 목적으로서 활용되는 것이라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나 회의형태로 보기 어려워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2년 6월 9일

행동강령책임관

감사실장 이 희 관

